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46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엄셋별 의원

1. 제안이유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천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및 제5조)

다. 시행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11. 15. ~ 2024.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

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문기관이나 단체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과 금천구의회 의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3호, 2023. 8. 8., 일부개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